(1) 기타재산수입 54 - 545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9년	202	0년	202	1년	증감	
7 3	결산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기타재산수입	6,124	5,728	5,728	1,467	1,467	△ 4,2 61	△74.4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
- 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- 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- 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- 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○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사업 대기성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연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수납액	3,850	3,646	6,124	7,189

(2) 법정부담금 59 - 59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9년	202	0년	202	1년	증감	
7 7	결산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법정부담금	687,320	696,600	696,600	1,002,004	1,002,004	305,404	43.8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.
- 2. 전파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 제1항(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- 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분담금
-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한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2. 수입 개요

○ 방송사업자 부담금(186,641백만원) 및 통신사업자 주파수할당대가(815,363백만원)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연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수납액	546,666	952,011	687,320	662,890

(3) 기타경상이전수입 59 - 596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9년	202	0년	202	1년	중감	
<u>= 3</u>	결산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기타경상 이전수입	28,163	33,018	33,018	40,782	40,782	7,764	23.5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
- 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- 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- 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- 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○ 기금사업비 비R&D 및, R&D사업에 대한 집행잔액, R&D사업에 대한 기술료 등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연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수납액	28,552	36,204	28,163	34,705

(4)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

85 - 852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9년	202	0년	202	1년	증감	
7 7	결산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통화금융기관	100.000	77 150	77.150	14 220	14 220	^ 62 020	△81.6
예치금회수	100,000	<i>77,</i> 159	77,159	14,230	14,230	△62,929	△01.0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
- 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- 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- 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- 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전년도('20년)말 통화금융기관(시중은행 등)에 예치한 여유자금 회수액
- 하나은행, 국민은행 등 18개 시중은행 중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치된 자금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연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수납액	47,000	10,000	100,000	25,000

(5)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

85 - 85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9년	202	0년	202	1년	증감	
7 3	결산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비통화금융기관	217 210	20.057	20.057	0.496	0.496	↑ 20 2 7 1	^ 7E 6
예치금회수	316,319	38,857	38,857	9,486	9,486	△29,371	△75.6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
- 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- 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- 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- 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전년도('20년)말 비통화금융기관(증권사 등)에 예치한 여유자금 회수액
- 한국투자증권, NH투자증권 등 22개 증권사 중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치된 자금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연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수납액	205,762	80,778	316,319	22,584

(6) 기금예탁원금회수 92 - 92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9년	202	0년	202	1년	증감	
ন ত	결산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기금예탁 원금회수	100,000	350,000	350,000	90,000	90,000	△260,000	△74.3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
- 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- 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- 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- 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원금중 당해연도 만기 도래하는 원금 회수액
- '19년 3,500억원 예치, '20년 계획 900억원 예치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연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수납액	100,000	100,000	100,000	350,000

(7) 기금예수금 94 - 94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9년 결산	2020년		2021년		중감	
	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기금예수금	-	-	207,389	282,729	282,729	75,340	36.3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
- 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- 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- 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- 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(수입금)
-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.
- 1.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
- 2.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
- 3. 차입금
- 4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○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 부족분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연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수납액	-	-	-	207,389

(8) 기금예탁이자수입 95 - 95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9년	2020년		2021년		증감	
	결산	당초	수정(A)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기금예탁	2 020	7 172	7 172	1 105	1 105	△6,048	△84.3
이자수입	3,838	7,173	7,173	1,125	1,125	△0,048	△04.3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- 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
- 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- 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- 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- 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○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연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수납액	1,773	260	3,838	1,167